

서울지방우정청 공고 제2026-0159호

우편업무규정 제326조 제3항 및 우편물 배달처리 기준의 예외에 관한 고시(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25-35호)에 따라 특수취급우편물 배달처리 기준의 예외 관서 조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우편물 배달처리 기준의 예외 관서 조정

1. 관서 조정 내역

- 가. 배달처리 기준의 예외 관서: 21국
- 나. 배달처리 기준 적용 관서: 1국

2. 배달처리 기준의 예외 관서(2회 배달, 2일 보관 후 반환)

구 분	관서명
서울지방우정청	서울중앙, 광화문, 서대문, 동대문, 서울광진, 서울마포, 서울은평, 서울영등포, 서울강남, 서울성북, 서울강동, 서울송파, 서울양천, 서울강서, 서울동작, 서울서초, 서울용산, 서울노원, 서울중랑, 서울도봉, 서울구로
계	21국

3. 배달처리 기준 적용 관서(2회 배달*, 4일 보관 후 반환)

* 2회째 배달은 수취인이 희망 시 보관기간 내 희망일에 배달

구 분	관서명
서울지방우정청	서울관악
계	1국

부 칙

이 공고는 2026. 10. 1.부터 시행한다.

2026년 8월 19일

서울지방우정청장